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 남광주신용협동조합장

건명 : 감정평가액 회신

번호 : 삼창제 E20205-02003 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 (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삼창감정평가법인**  
Samchang Appraisal Co., Ltd.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1 (화정동, 7층)

TEL. (062) 365-0009 / FAX. (062) 365-9600



# 감정평가 요약 | 토지

## 1. 감정평가의 대상물건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36		
물건종류	토지	이용상황	공업나지

## 2. 감정평가액

※ 상세내역은 괄호감정표 참조

구분	감정평가액(원)
토지	2,442,604,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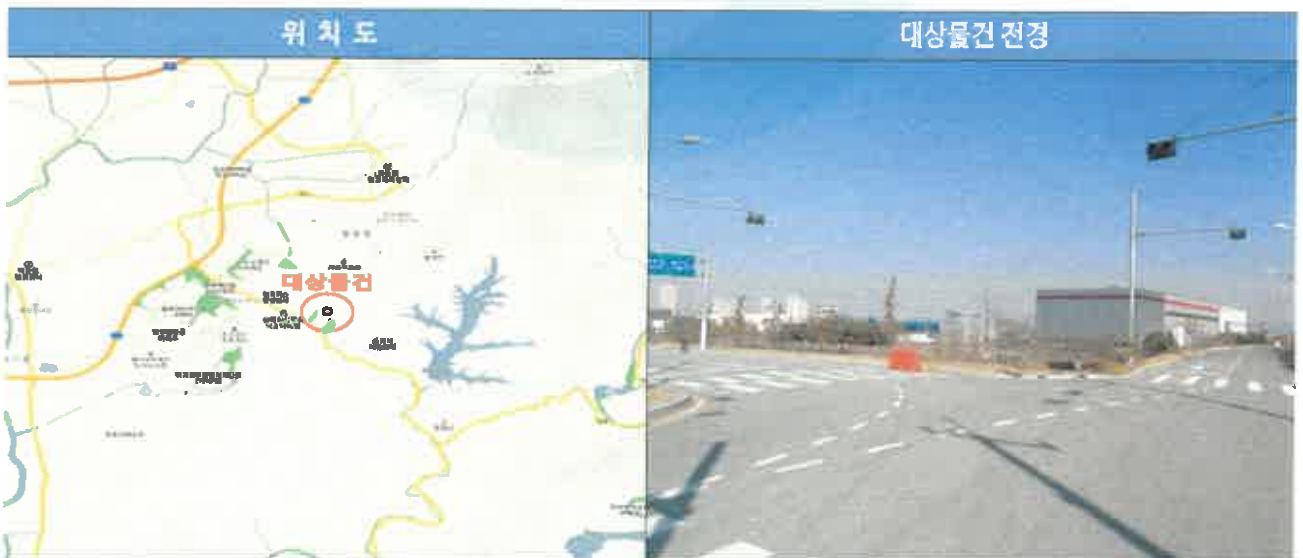
## 3. 제시의 건물 등

제시의 건물 여부 등	가격에 미치는 영향
X	-

## 4. 참고사항

참 고 사 항
-

## 5. 위치도 및 대상물건 전경



## 감정평가 심사 인증서

감정서번호	E20205-02003	심 의 일	2020-02-20
평가목적	공매	담당평가사	김용희
발 의 처	남광주신용협동조합		
제 출 처	남광주신용협동조합		
물건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36		
감정평가액	一金貳拾四億四仟貳百六拾萬四仟參百圓整 (₩2,442,604,300.-)		

본 건 (감정평가서번호 삼창 제E20205-02003호)은 우리 법인의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 감정평가건 으로서 본  
감정평가서는 심사사항(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 감정평가내용의  
적정성, 협약사항 및 협조사항의 이행,기타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충실하게 작성되어, 본사 감정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필요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최승조



(부동산)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 용 희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장 김 광 욱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십사억사천이백육십만사천삼백원정 (₩2,442,604,300)		
의뢰인	남광주신용협동조합장	감정평가목적	구매
채무자	--	제출처	남광주신용협동조합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한회사 광진컴퍼니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0. 02. 13	2020.02.11 -2020.02.13
			작성일
			2020. 02. 17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 (의리)		사 경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수량	종별	면적(㎡) 또는수량	단가	금액
	토지	9,013.3	토지	9,013.3	271,000	2,442,604,300
합계					₩2,442,604,300	
	이	하	여	백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소재 '동성초·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남광주신용협동조합에서 의뢰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 나. 감정평가조건

-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 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 ③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나. 위 규정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각각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토지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그 밖의 사항

가. 동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는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이나 귀 협 감정평가의뢰서상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광진컴퍼니'로 표기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물건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상물건 거래내역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비고
두성리 1436	공장용지	준공업	9,013.3	1,850,000,000	약 205,252	2018.11.05	동기사항 전부증명서상

### 5. 대상물건의 확정

가.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2019년)	비고
1)	두성리 1436	9,013.3	9,013.3	공장 용지	준공업	공업나지	중로 각지	사다리 평 지	129,600	-
합계	-	9,013.3	9,013.3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위치도



### 6. 기준시점 등

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일을 기준하여 2020년 02월 13일로 함.

나. 실지조사(2020년 02월 11일 ~ 2020년 02월 13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지가수준을 확인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비교표준지 선정(공시기준일: 2020.01.01)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표준지 A	두성리 1137	8,374	공장 용지	준공업	공업용	광대 소각	정방형 평 지	162,000

### 위 치 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표준지 A	충청북도 음성군 '공업지역'	2020.01.01~2020.02.13	0.131	1.00131	2019년 12월 연장적용

### 다.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 공업지대 [일련번호 1)/표준지A]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A)	비 고	
가 조	로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0.96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열세함.
접 조	근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등		
환 조	경 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등	1.20	인근토지와 적합성 등에서 우세함.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 조	지 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1.00	유사함.
행 조	정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등	1.00	유사함.
기 조	타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15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마. 그 밖의 요인의 보정

####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 2004.05.14) 등에 근거하여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전례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 2)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 가) 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감정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격차율
①	두성리 1031	공장 용지	11,047.6	준공업	담보	2019.11.11	218,000	147,200	≈1.48
②	두성리 1060	공장 용지	9,453.4	준공업	담보	2017.10.23	219,000	136,50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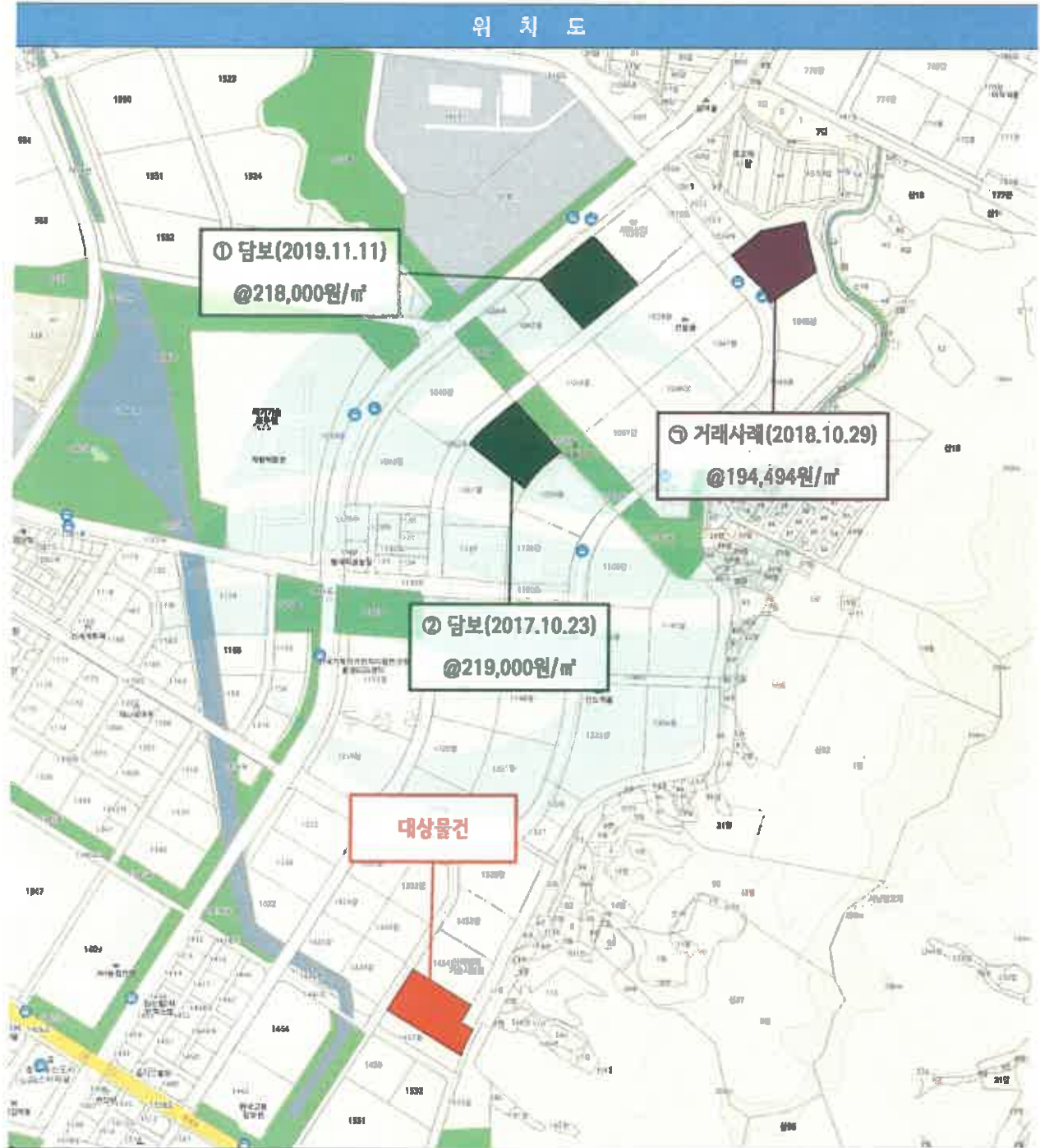
##### 나)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두성리 1027	공장 용지	준공업	9,779.1	1,901,980,000	약 194,494	2018.10.29	14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다)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의 위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인근지역 지가수준

#### 가) 지가수준

용도지역	용도	도로조건	지가수준
준공업	공업용, 공업나지	종로한면	210,000~250,000원/㎡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 가) 산정방법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의 표준지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비교표준지의 기준시점단가와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음.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1) 비교사례의 선정

선정 비교사례	<b>감정평가사례 ①</b>
비교사례 선정의견	상기의 인근 지역 내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효용성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위의 사례를 선정하였음.

#### (2)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①	충청북도 음성군 '공업지역'	2019.11.11~2020.02.13	0.396	1.00396	2019년 12월 연장적용

#### (3)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개별요인 비교

#### ■ 공업지대 [표준지A/비교사례①]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표준지A /비교사례①)	비 고	
가 조	로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5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우세함.
접 조	근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등		
환 조	경 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등	1.00	유사함.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 조	지 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1.03	접면도로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
행 조	정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등	1.00	유사함.
기 조	타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8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구분	비교사례	비교사례 단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단가(원/㎡)
표준지 A	①	218,000	1.00396	1.000	1.082	236,810

(6) 격차율산정

$$\frac{\text{비교사례① 기준 비교표준지단가}}{\text{표준지공시지가A} \times \text{시점수정}} = \frac{236,810}{162,000 \times 1.00131} \approx 1.460$$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표준지	결정 보정치
인근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및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A	1.45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기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신청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A	162,000	1.00131	1.000	1.152	1.45	270,959	271,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 가. 거래사례 선정

##### 1) 선정기준

선정 비교사례	거래사례 ㉠
비교사례 선정의견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실거래 중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 2)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두성리 1027	공장 용지	준공업	9,779.1	1,901,980,000	약 194,494	2018.10.29	141,000

#### 나. 사정보정

결정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다.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	충청북도 음성군 '공업지역'	2018.10.29~2020.02.13	1.989	1.01989	2019년 12월 연장적용

###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마. 개별요인 비교

#### ■ 공업지대 [일련번호 1)/비교사례㉔]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 /비교사례㉔)	비 고	
가 조	로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0.97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열세함.
접 조	근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등	1.10	인근교통시설의 접근성에서 우세함.
환 조	경 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등 지반, 지질 등	1.20	인근토지와와의 적합성 등에서 우세함.
획 조	지 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1.10	형상 및 접면도로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
행 조	정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등	1.00	유사함.
기 조	타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40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번호	비교사례 기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㉔	194,494	1.000	1.01989	1.000	1.408	279,294	279,000	-

### 3.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 가.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결정단가 (원/㎡)
1)	271,000	279,000	271,000

#### 나. 시산가액의 조정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 1) 시산가액의 조정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가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시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충청북도 음성군 맹등면 두성리 1436	9,013.3	9,013.3	271,000	2,442,604,300	-
<b>합 계</b>		<b>9,013.3</b>	<b>9,013.3</b>	-	<b>2,442,604,300</b>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I.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정에 적용할 가액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및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2,442,604,300	상세내역은 명세표 참조
합 계	2,442,604,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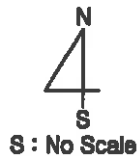
끝.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36	공장용지	준공업지역	9,013.3	9,013.3	271,000	2,442,604,300	
	<b>합 계</b>							<b>₩2,442,604,300</b>	
			<b>이</b>	<b>하</b>		<b>여</b>	<b>백</b>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지적도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소재 '동성초·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공업나지 등이 혼재한 충북혁신도시 내 공장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및 도로상태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편인 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되며, 본건 서측으로 왕복 3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동측은 도로와 등고차가 있음.
형태 및 이용상황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 입련번호 1) 도시지역(2013-01-07), 준공업지역(2015-12-3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소(국)2-13)(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집)2-4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시목록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만의 감정평가로서 임대관계는 미확인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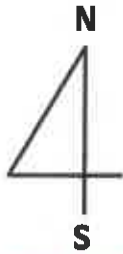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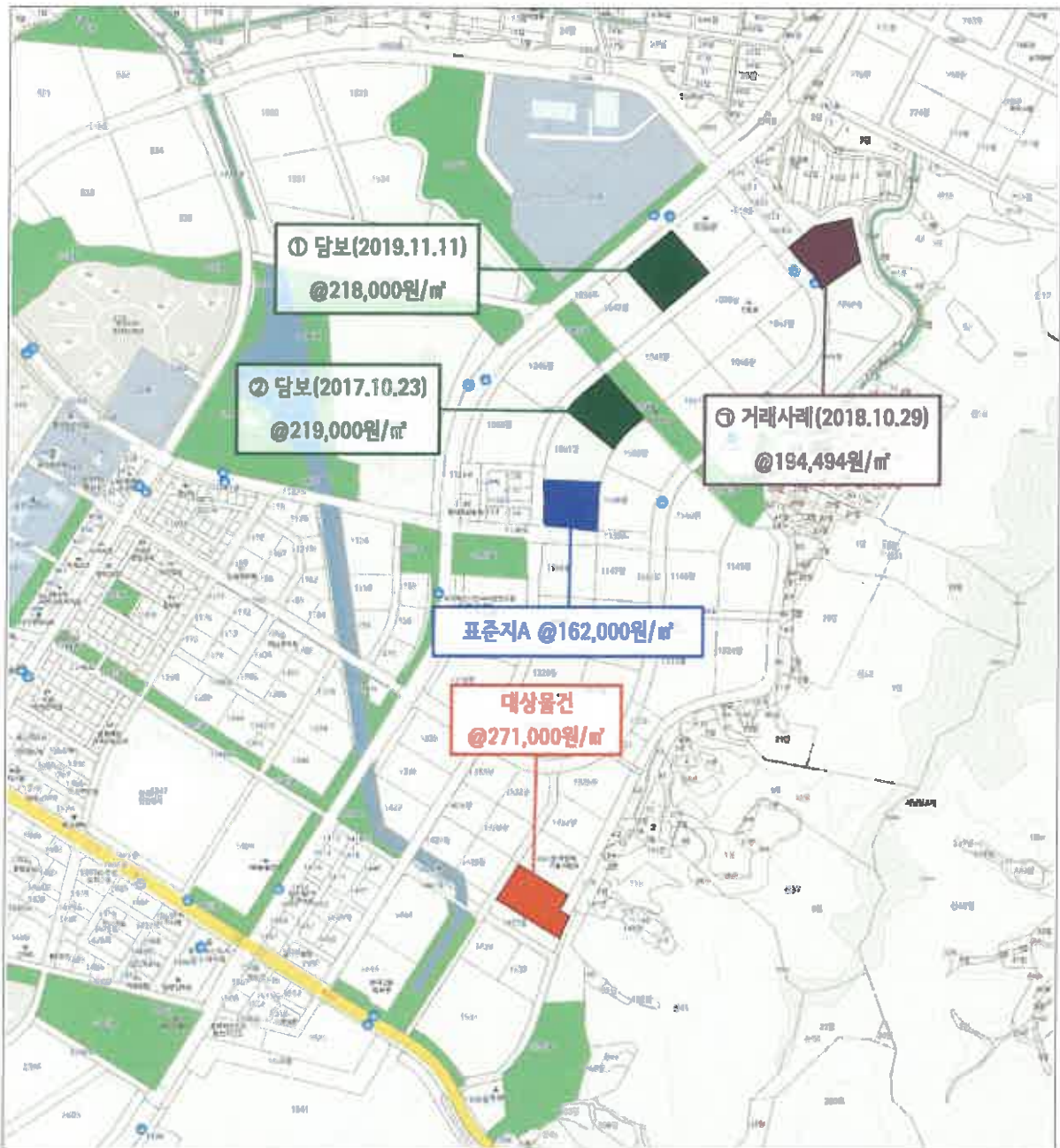


# 상세 위치도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36





사 진 용 지



[ 주위전경 ]



[ 주위전경 ]

사 진 용 지



[본건]



[본건]



# (주) 삼창감정평가법인

수 신 : 남광주신용협동조합장  
(경 유)  
참 조 : --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1. 우리 법인의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02. 06자로 귀하께서 의뢰하신 「감정평가액 회신」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감정평가하여 회보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유선/휴대폰) / E-mail  
(감정평가서번호, 채무자명 또는 의뢰인명 기재 요망)

불	임 :	1. 감 정 평 가 서	2 부
		2. 수 수 료 청 구 서	1 부 끝.

## (주) 삼창감정평가법인 광 주 전 남 지 사 장

시 행 삼창 제 E20205-02003 호 (2020. 02. 17)

우)61979 광주광역시 서구상무대로 1071 (화정동, 7층) 전화 (062)365-0009 FAX (062)365-9600

(세금계산서) 전화(062)365-0009 FAX(062)365-9600 E-mail :samchang011@daum.net <http://www.isamchang.com>

# 수수료 청구서

남광주신용협동조합 귀하

삼창 제 E20205-02003 호

금이백이십만삼천삼백원정

₩2,203,300

의뢰문서번호 :

의뢰 일자 : 2020.02.06

건명 : 감정평가액 회신

##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가수수료	1,879,266	
나. 여 비	115,600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1,000	
기타 실비	8,000	
특별용역비		
소 계	124,600	
공 급 가 액	2,003,000	※ 1,000원 미만 결사
부 가 가 치 세	200,300	
합 계	2,203,300	
기납부 착수금		
청 산 청구액	2,203,300	

위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하오니 기납부착수금을 뺀 금액을 아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 금 처 ※ 송금시 무통장 입금용지의 입금 의뢰인란에 감정서번호 "E20205-02003호" 기재 바람.

※ 사업자등록번호(공급자) : 4108527260

광주은행 서광주	122-107-307315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기업은행 서광주지점	188-104378-04-015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농협중앙회 금남로	605-01-368445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석곡농협 목사동지점	355-0006-1162-63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주) 삼 창 감 정 평 가 법 인**  
**광주전남지사장**